

2023년도 역촌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2023년도
역촌동 주민자치회

**자 치 계 획
결과보고서**

목 차

인사말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장 홍상만	04
역촌동 동장 이동섭	05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일반개요

01 역촌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7
02 역촌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8
03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09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돌아보기~

10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현황

01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13
02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자료	19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업별 보고

01 함께하는 어깨동무	23
02 간단한 집수리	24
03 이미용 2	25
04 만들고 나누고	26
05 노노케어	27
06 역주행 활성화	28

2024 의제 선정 과정

2024 동 참여예산 부서 검토 상정 의제	31
2024 동 참여예산 부서 검토 적격 의제	32
2024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상정 의제	34
2024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투표 결과	35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활동 소감

37

별첨자료

별첨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3
별첨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50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장 **홍상만**

지난 시간이 거름되어 2024년을 꽃 피우길

안녕하세요. 역촌동 주민자치회장 홍상만입니다.

2023년은 주민자치회에 있어 다양한 도전과 마주해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난관을 함께 이겨내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사무국, 그리고 행정 공무원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주민 모두와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당일 우천으로 진행에 작지 않은 차질들은 있었지만 장기자랑과 초청가수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부스에서 주민 모두가 오랜만에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준비도 다소 부족함은 있었겠지만 이 또한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회의 오프라인 공론장과 온라인 의제발굴, 노인시설 운영자 간담회와 아동시설 운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잊지 않고 꼭 챙기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1년입니다. 단단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나무의 흔들림을 체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에 달린 책임감과 도덕성이라는 무게감이 새삼 새롭게 모두의 마음에 자리했기를 바라봅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웃는 일 가득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장 **홍상만**

일상의 회복, 더 넓은 장에서 주민과 함께



역촌동 동장 이 동 섭

안녕하십니까, 역촌동장 이동섭입니다.

지난 3년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님들과 분과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작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5개의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행복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의 간담회와 마을 청소, 워크샵과 자매결연지 방문까지 새로운 시도들이 가득했던 상반기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주민총회를 통해 더 나은 역촌동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힘든 상황에서 축제와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인조별서유기비 옆에는 새롭게 누리공간이라는 주민들의 공간이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공간과 함께 누리공간이 다양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3기도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촌동을 위해 봉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올해 총회에서 선정된 10개의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에 추진될 다양한 행사도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3년 12월 21일
역촌동 동장 이 동 섭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일반 개요

역촌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건강분과

주희언
백승자
김종환
오수복
윤미숙
이덕력
이순임
이진용

나눔분과

장여선
권성연
신재교
이봉흠
이양수
정영숙
조정현
오덕수

복지분과

마천숙
홍청자
김은숙
김형자
차화석
황연하
이정숙
노경임
유혜경

자치분과

김윤진
강정순
김명화
김정란
주명희
윤경학
이승분

정책분과

이춘희
문선미
이선미
송천식
천경순
김태희
이형자
정봉걸
김은아

홍보분과

전혜정
백소영
김수연
김을수
박상현
박주호
손지영
신태진
정판정

환경분과

박민선
강동욱
김영섭
김지호
오일용
장순복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기반으로 개선하고 싶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촌동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 59명 (2023. 12.10. 기준)

(단위: 명)

계	성 별		연 령 별		단체, 개인별	
	남	여	40대 이하	40대 이상	단체	개인
59	18	41	1	58	22	37

☐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3. 12.21. 기준)

회 장	부회장	감 사	사무국장	간 사	분 과 장
홍상만	주희언	윤경학	이효미	오흥덕	이춘희, 마천숙, 김윤진, 장여선, 전해정, 박민선, 주희언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현황 (2023. 12.21. 기준)

분과명	분과장	위 원	분과원	주요업무
정책분과	이춘희	문선미, 이선미, 송천식, 천경순, 김태희, 이형자, 정봉걸, 김은아		마을의제 상시 발굴 및 주민총회 기획
복지분과	마천숙	홍청자, 김은숙, 김형자, 차화석, 황연하, 이정숙, 노경임, 유혜경		주민들의 복지 향상 의제 발굴
자치분과	김윤진	강정순, 김명화, 김정란, 윤경학, 이승분, 주명희	신미재, 황춘자, 조판순, 박현희, 박선녀	자치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논의
나눔분과	장여선	권성연, 신재교, 이봉흠, 이양수, 정영숙, 조정현, 오덕수		이미용 사업을 통해 나눔 실천
홍보분과	전혜정	백소영, 김수연, 김을수, 박상현, 박주호, 손지영, 신태진, 정판정		주민자치 활동 홍보 총괄 네이버 카페 운영 책임
환경분과	박민선	강동욱, 김영섭, 김지호, 오일용, 장순복	김정수	마을 환경개선과 간단한 집수리 프로그램 교육 진행
건강분과	주희언	백승자, 김종환, 오수복, 윤미숙, 이덕력, 이순임, 이진용	정재영	건강걷기, 맷돌체조 운영

○ 2023.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마무리 및 2023년 사업계획 • 3기 주민자치회장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사업정산 및 마무리 / 감사 실시 - 2023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 역촌동 3기 주민자치위원 모집
○ 2023. 0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촌동 3기 구성 •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 주민사업 6개 활동시작 • 노인시설 간담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14일 : 운영회의 워크숍 실시-1년 계획 논의 - 3월 08일 : 지역아동센터와의 간담회 - 3월 15일 : 나눔분과 이미용 사업 시작 - 3월 23일 : 건강분과 건강걷기 사업 시작 - 3월 30일 : 노인시설 간담회 실시
○ 2023. 0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제발굴 실시 • 단합 워크숍 실시 • 1차 공론장 실시 • 역주행 개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04일 : 1차 마을 둘러보기 - 4월 06일 : 2차 마을 둘러보기 - 4월 17일 : 3차 마을 둘러보기 - 4월 18일 : 정기회의 - 4월 24일 : 역촌주민자치회 단합 워크숍 - 5월 16일 : 1차 역촌동 주민참여예산 공론장 - 5월 24일 : 역주행 개소식
○ 2023.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혈캠페인 • 자매결연지 방문 • 의제 부서검토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검토 신청 - 6월 13일 : 헌혈 캠페인 실시 - 6월 19일 : 매실 담그기 - 6월 21일 : 자매결연지 영월 일손돕기 방문
○ 2023.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공론장 실시 • 상반기 감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0일 : 부서검토 완료, 동전달 - 7월 18일 : 2차 역촌동 주민참여예산 공론장 - 7월 19일 : 총회 준비 위원회 1차 회의
○ 2023.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08일 : 회장, 부회장 선거 - 8월 16일 :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 2023.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노케어 2차 실시 • 구민체육대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05일 : 후반부 노노케어 사업 실시 - 9월 07일 : 건강걷기 DMG 방문 - 9월 20일 : 축제 부스팀 미팅 - 9월 21일 : 복지 분과 승편 만들기 실시 - 9월 23일 : 은평구민 체육대회 실시
○ 202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 한마당 실시 • 주민총회 실시 • 동축제(한마음축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07일 : 어울림 한마당 실시 - 10월 14일 : 역촌동 한마음 축제 및 역촌동 총회 실시 - 10월 24일 : 앵봉산 개장식 참석 - 10월 26일 : 복지분과 매실청 나눔 실시
○ 202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사업 진행 및 마무리 • 역량강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02일 : 역주행 모니터링 실시 - 11월 13일 : 의제개발 워크숍 실시 - 11월 28일 : 노노케어 김장 실시(230명 수혜)
○ 202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 마을 둘러보기, • 위원 역량강화 교육 •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및 송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13일~15일 : 겨울 마을 둘러보기 실시(3회) - 12월 19일 :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및 송년회 - 12월 21일 : 역량강화 “피자 만들기” 실시 - 각 분과사업 마무리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 정기회의 |



| 운영진회의 |



| 운영진 워크숍 |



| 아동 돌봄 단체 간담회 |



| 노인시설 간담회 |



| 마을 둘러보기 의제발굴 |



| 역량 강화 워크숍 |



| 1차 의제 발굴 공론장 |



| 역주행 개소식 |



| 자매결연지 일손돕기 |



| 주민총회 사전투표 |

주요 활동 돌아보기



| 은평구민 체육대회 |



| 역촌동 한마음 축제 |



| 역촌동 주민총회 |



| 역량강화 워크숍 |



| 역량강화 교육 |



| 역주행 홍보 |



| 노노케어 김장봉사 |



| 2023년 성과공유회 |



| 2023년 송년 역량 강화 |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현황

감사 개요

근 거 :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장 재정 및 예산관리, 제37조(사업비 관리), 제38조(재정), 제39조(특별회비), 제40조(회계 및 지출), 제41조(회계연도)에 근거함.

감사일시 : 2023. 7. 17. (월) / 오후 5시

감사장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회의실

감 사 : 윤경학

참 석 자 : 부회장 : 홍상만, 사무국장 : 이호미, 간사 : 오흥덕

업무협조 : 담당 행정 주무관 : 최운영

감사 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월 1회, 셋째주 화)	2023년 1월~6월 중 : 3기 정기회의 - 1월 ~ 6월 (6회 개회) ※ 1월은 행정에서 진행(임원선출, 간사 선정)
2	운영진회의 (월 1회, 둘째주 화)	2023년 2월~6월 중 : 3기 운영진회의 - 2월 ~ 6월 (5회 개회) 정기회의 전 사전 운영진회의를 통해 정기회의 의결 사항 선정 및 공유, 사업활동을 공유하는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함.
3	7사업 분과장회의, 민관협력회의 (월 1회 이상)	행정과의 공유사항과 협력사항을 논의하며 원활한 자치 사업을 진행함.
4	사무국회의 민관실무회의 (필요시 상시진행)	사무국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 운영되었으며 필요시 상시 진행함으로 운영진회의 및 정기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줌
5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및 축제 준비위원회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총 6회 진행 축제 준비위원회-필요 시 상시 진행함으로 원활한 행사 준비에 도움을 줌
6	자치회관 운영	1분기에는 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분기에는 건강댄스와 바리스타 자격증, 손가락 난타를 추가적으로 개설함

2.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상태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적 정
2	지출서류(결의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적 정
3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적 정
4	회계장부 비치 및 서류	적 정
5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 (기타소득세 납부여부)	적 정

3. 주민자치회 주민활동사업(주민세, 참여예산) 진행 현황 점검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간담회 실시	- 23.3.8.(수) 서로 협업할 일들을 논의
2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 23.4.24.(월)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일산 초원의 집)
3	의제 제안 마을 둘러보기 실시	- 23.4.4.-23.4.17. 의제제안 마을 둘러보기 3회 실시
4	1차 공론장 실시	- 23.5.16. 마을 주민과 공론장 실시
5	3차 연합 현혈 캠페인 실시	- 23.6.13. 불광1동, 신사1동, 구산동, 응암동, 역촌동 실시(5개동)
6	동특화사업 : 찾아가는 역촌 노노케어	- 23.6.23.(화) 노노케어 실시 상반기 7회 실시, 활동가 30명, 수혜가구 90가구
7	건강분과 -건강걷기 실시	- 23.4.23(목) 건강걷기 시작 -23.7.6.일 까지 실시 (무더위로 잠시 중단)→9월에 다시 진행 예정
8	건강분과-맷돌체조 실시	- 23.4.19. 맷돌체조 시작, 주민센터 앞-현재 진행 중
9	이미용 2	- 23.4.12.(수) 시작 매월 2째주 수요일 실시(현재 진행 중)
10	간단한 집수리	- 23.4.12.(수) 시작 10회 수업 매주 수요일 실시-현재 진행중
11	역주행 개소식	- 23.5.24.(화) 개소식 실시

4. 주민자치회 서류감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 집행자금 모두 통장계좌 입금 - 지출성 경비는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확인
2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 우리은행 응암동지점 개설
3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목적 외로 임의사용 사항 없음
4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 일치함 : 총계정원장
5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 사무국장, 간사 가입 확인
6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 미비서류 시정 요청
7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 소득세 : 국세청 납부 ⇒ 행정 - 지방세 : 서울시 납부 ⇒ 행정
8	근무시간에 따른 사무국장 활동비,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기타소득세 납부여부)	- '사무국장 활동 기록부, 간사 활동 기록부' 확인 ⇒ 근무시간에 따라 월 200만원, 100만원-정당지급
9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 비치 有
10	직인의 보관관리	- 비치 有
11	주민자치회 통장 관리	- 비치 有
1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 비치 有 (행정)
13	연 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 여부	- 자산취득 물품 확인
14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누락 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 행정 보관
15	2기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비통장	- 은평신용협동조합 응암역지점 개설

5. 서울형 주민자치회 회계서류 17개 확인 (시범 5개동 공통서류)

연 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2	정기회의 회의록	○
3	지출결의서	○
4	총계정원장	○
5	사업 회의록	○
6	감사 보고서	○
7	운영진 회의록	○
8	민관협력 회의록	○
9	비품대장	○
10	주민자치위원 명부	○
11	사무국장, 간사 활동 일지	○
12	직인 사용 대장	○
13	법 령 (조례, 운영세칙)	○
14	주민총회 관련 서류	○
15	수발신 문서철	○
16	내부 문서철	필요시 작성
17	업무 인수인계서	필요시 작성

6. 감사총평

2023년도는 참여예산 사업이 대부분이라 행정에서 서류 관리를 하여 2022년 대비하여 서류가 많이 간소화 되고 실행 사업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통해 점검한 바 모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노케어, 역주행, 건강걷기, 만들고 나누고, 간단한 집수리, 찾아가는 이미용 등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의제 결정을 위한 공론장과 총회 준비도 잘 진행되고 사무국 운영과 의제 개발 부분의 서류도 잘 갖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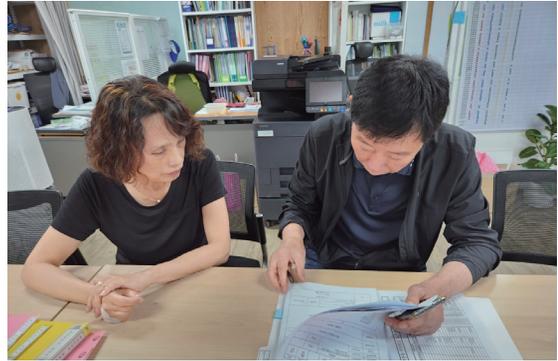
하반기 사업 진행도 기대된다.

2023년 7월 17일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윤 경 학 (서명 생략)

은 평 구 청 장 귀 중

7. 진행사진



1. 운영비 (사업비, 의제개발비, 사무국장 활동비, 간사활동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기본경비(구비) 500만 원	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운영비/업무추진비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실행주체 : 역촌동 주민자치회 	원활하게 진행됨
사무국장 활동비 2,400만 원	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사무국장 활동비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실행주체 : 역촌동 주민자치회 	원활하게 진행됨
간사활동비 1,440만 원	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간사활동비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실행주체 : 역촌동 주민자치회 	원활하게 진행됨

2. 실행사업 (구 단위 참여예산)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노노케어 5,000만 원	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게 밀반찬 나눔을 함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실행주체 : 주민자치위원 및 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실시. 30명의 활동가가 90명의 수혜자들에게 반찬 나눔을 진행함. - 17회 반찬나눔과 1회 김장 나눔을 실시함.
함께하는 어깨동무 800만 원	3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역촌동 주민들과 함께 건강걷기, 댄스체조 프로그램 실시 장 소 : 역촌동 인근지역 실행주체 : 건강분과 	건강걷기는 매주 목요일, 댄스체조는 매주 수요일 실시.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소통의 장을 만들.
간단한 집수리 교육 200만 원	3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간단한 집수리 교육 실시 장 소 : 역주행 실행주체 : 환경분과 	역촌동 행복공간에서 10회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함.
이미용 2 400만 원	3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역촌동 65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미용, 염색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실행주체 : 나눔분과 	매월 첫째주 수요일 실시. 회당 30~40분의 어르신들의 이미용 및 염색을 해 드림. 만족도가 높음.

만들고 나누고 600 만 원		3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생필품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나눔 ● 장 소 : 역촌동 관내 ● 실행주체 : 자치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가방 100개를 경로당에 증정. - 물병주머니 100개를 지역아동센터에 기증. - 다용도 사각 목공 100개를 신나는 에프터센터에 기증.
역주행 3,000 만 원	역주행 활성화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역촌동 행복공간의 활성화 ● 장 소 : 역주행 ● 실행주체 : 역촌동 주민자치회 	- 12월 4일~12월 7일까지 역주행 홍보를 위해 프로그램 실시.
	매실청 담그기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역주행의 활성화를 위해 매실청을 만들고 나눔 ●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역주행 ● 실행주체 : 복지분과 	- 매실청을 담궈서 150가구 취약계층에게 나눔.
	샌드위치 만들기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역주행의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들과 샌드위치 만들기 실시 ●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역주행 ● 실행주체 : 복지분과 	- 초등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샌드위치 만들고 나눔.
	송편 만들기	3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역주행의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다문화 가족과 송편만들기 실시 ● 장 소 : 역촌동 주민센터, 역주행 ● 실행주체 : 복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과 함께 추석에 송편만들기를 하며 추석에 대한 유래와 전통음식 소개. -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 조성.
의제개발비 1,500 만 원		3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2024년 마을의제발굴 및 주민총회실시 ● 장 소 : 역촌동 ● 실행주체 : 역촌동 주민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제 발굴 및 선정 - 주민총회 준비 - 성과공유회 실시

3. 보조금 2023년 예산

사업구분		항 목		집행내역		
		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금액	잔액
주민 자치회 사업비	주민자치회 운영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138,930	138,930	0
			공공운영비	343,720	343,720	0
			행사운영비	3,077,350	3,077,350	0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440,000	1,440,000	0
	의제개발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1,588,770	1,588,770	0
			행사운영비	9,428,785	9,428,785	0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4,480,000	4,480,000	0
참여예산 사업		함께하는 어깨동무		8,000,000	5,330,590	2,154,320
		간단한 집수리		2,000,000	1,314,330	685,670
		이미용 2		4,000,000	2,945,370	1,054,630
		만들고 나누고		6,000,000	6,000,000	0
		노노케어		50,000,000	50,000,000	0
		역주행		30,000,000	25,176,270	4,823,730
(동) 문화축제		총사업비		18,000,000	18,000,000	0
		행사운영비		17,315,000	17,315,000	0
		행사실비 보상금		685,000	685,000	0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업별 보고

함께하는 어깨동무

- 예산 + 800만원
- 진행 + 건강분과
주희연, 백승자, 김종환, 오수복, 윤미숙, 이덕력, 이순임, 이진용
- 활동내역 + 주민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걷기, 맨돌체조)을 실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



간단한 집수리

- 예산 + 200만원
- 진행 + 환경분과
박민선, 강동욱, 김영섭, 김지호, 오일용, 장순복
- 활동내역 + 간단한 집수리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실시



이미용 2

- 예산 + 400만원
- 진행 + 나눔분과
장여선, 권성연, 신재교, 이봉흠, 이양수, 정영숙, 조정현, 오덕수
- 활동내역 +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및 염색 실시



만들고 나누고

- 예산 + 600만원
- 진행 + 자치분과
김윤진, 강정순, 김명화, 김정란, 주명희, 윤경학, 이승분
- 활동내역 + 주민들의 취미 프로그램으로 생필품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나눔



노노케어

- 예산 + 5,000만원
- 진행 + 역촌동 주민자치회, 지역 65세 이상 주민봉사단 30명
- 활동내역 + 역촌동 특성화 사업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노인이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나눔(30명의 노인이 90명의 노인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역주행 활성화 (예산 3,000만원)

①

예산 + 300만원

진행 + 복지분과
마천숙, 홍청자, 김은숙, 김형자, 차화석, 황연하, 이정숙, 노경임, 유혜경

활동내역 + - 어린이와 함께하는 샌드위치 만들기
- 매실청 담그기
- 다문화 이웃과 함께 추석 송편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림



역주행 활성화 (예산 3,000만원)

②

예산 + 200만원

진행 + 주민자치회 사무국, 홍보분과
홍상만, 주희연, 이효미, 오흥덕, 전해정, 백소영, 박상현, 손지영, 김수연,
김을수, 정판정, 신태진, 박주호

활동내역 + 역주행의 홍보를 위해 수세미뜨기, 워머뜨기,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
카드지갑 만들기, 비즈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실시



역주행 활성화 (예산 3,000만원)

③

예산 + 2,500만원

진행 + 주민자치회 사무국
김세희, 홍상만, 주희연, 이효미, 오흥덕

활동내역 + 집기구매, 시설, 관리, 홍보, 개소식 등



2024년 동 참여예산 부서 검토 상정 의제

구분	사업명
시설	01. 마을 간이 쉼터조성(벤치설치)-달콤한 휴식 02. 셉테드로 안심마을 조성(벽화, 화단 등) 03. 역마차 04. 역촌초 주변 횡단보도 자동 차단기 설치 05. 교통섬 상시 버스킹 가능한 무대 및 비 가림막 설치
문화	06.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공간(역주행1+역주행2) 07.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지도 만들기(역주행1) 08. 다문화이웃과 함께하는 역사탐방(역주행2)-과거로의 여행 09. 방과후 독서방 10. 진로체험 프로그램 11. 해설사 양성
환경	12. 나눔장터(아시나요? 아나바다!) 13. 탄소제로실천 프로젝트(천연염색, 음식물퇴비, 상자텃밭, 분리수거 교육, 정화조 친 환경 약제 분사, 재활용기 줄이기 캠페인, 땅 넓히기 화단 만들기 등) 14. 취약지 보행 환경개선(전봇대 화분설치, 마을청소, 무단투기 장소에 화분설치 등)
프로그램	15.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건강걷기, 상담교실 등) 16. 어르신 무료 이미용과 봉사자 교육 17. 삼식이 탈출기(은퇴 후 한끼 정도는 직접 만들 수 있는...) 18. 십시일장(재래된장을 체험하고 취약계층과 나눔까지 할 수 있는...) 19. 만들고 나누고 20. 신나게 놀자(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골목축제) 21.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22. 아동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23. 마을연극단 창단 24.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동 돌봄 25.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자국 음식 만들기 26. 개/고양이 사랑캠페인 27. 농수산물 공동구매 28. 반려식물 나눔 29. 청소년 밴드 결성 30. 청소년 멘토링 서비스(미술상담, 학습상담 등) 31.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 교실 32. 교통섬 버스킹 33. 옷재단 교육 34.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35. 독거어르신을 위한 정기적 집안 정리 36. 가족이 손편지 써서 이웃에 전달하기 37. 드론 교육(하늘과 구름 사이로) 38. 이제는 말 할 수 있다(수어교육)

2024년 동 참여예산 부서 검토 적격 의제

구분	사업명	사업설명
시설	봉산 침사지 안전 펜스 설치	봉산 입구 침수지 안전펜스 설치
	셉티드 적용 안심마을 개선 프로젝트	안심마을 벽화 보수, 안심 골목 조성
등특화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공간 (역주행 1,2호점)	역주행 1호, 2호점 활성화 사업(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 및 사업 실시)
환경	아시나요 아나바다	역촌동 아나바다 운동의 장, 벼룩장터를 실행하는 사업
	탄소제로 일곱 개의 약속	탄소제로의 사업을 고민하고 배우는 사업
	천연염색	일회용 휴지, 물휴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수건을 만들고 염색하고 나눠주는 사업
	버려진 공간 새로 살리기	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 구간의 전봇대에 화단, 화분을 설치하는 환경개선 프로그램 사업
	옷 리폼 교육	재봉 기술을 배워 안 입는 옷으로 아이 옷, 소품 등을 리폼하는 사업
프로그램	너른마당 버스킹 나도 스타	매주 수요일 너른 마당에 1부는 인디 가수 초청 공연, 2부는 노래자랑으로 문화 예술의 은평을 만드는 사업
	이웃과 함께 가는 과거로의 여행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해 우리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는 사업
	나눔의 기쁨	주부들의 취미반을 개설해서 생필품을 함께 배우고 만들어 취약계층에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자국 음식 만들기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이 만나 타국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고 서로 문화 교류를 하는 사업

2024년 동 참여예산 부서 검토 적격 의제

프로그램	드림 아카데미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만들어 주는 동아리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정하면 인력, 정보를 지원해 주는 사업
	마음편히 일하세요	유아가 아닌 초등학생들을 돌봄하는 사업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혼자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운동과 건강 걷기를 통해 몸을 튼튼히 하고 마음도 함께 튼튼하게 하는 프로그램 사업
	반려동물 사랑 캠페인	반려동물에 관한 기본교육, 간식, 장난감, 옷 등의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 사업
	반려 식물도 좋아	식물의 기본특성과 종류를 교육하고 심고 가꾸어 보는 프로그램 사업
	보드게임 케이커튼 축제	보드게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교육
	숲 해설사 양성 과정	숲 해설사 양성을 위해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
	십시일장	재래된장에 관심 있는 주민을 모집하여 장도 만들고 만든 장의 일부를 기부해 취약계층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
	역촌대학	대학에서 배워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 대학(예. 한달살과, 연애해볼과, 성배워볼과 등)
	역촌 행복미용실	취약계층의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찾아오는 미용과 찾아가는 미용을 병행함으로 인간 존중의 의미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 사업
	역촌 소식 통통 역주행 방송국	유튜브 교육, 기사작성 교육, 라이브 방송 교육, 오디오 장비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활동 및 정보 교류를 하는 사업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화 교육을 통해 농아인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프로그램 사업

2024년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상정 의제

구분	사업명	사업설명
시설	봉산 침사지 안전 펜스 설치	봉산 입구 침수지 안전펜스 설치
	안심마을 벽화 보수 프로젝트	안심마을 벽화 보수, 안심 골목 조성
동특화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공간 (역주행 1,2호점)	역주행 1호, 2호점 활성화 사업(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 및 사업 실시)
환경	아시나요 아나바다	역촌동 아나바다 운동의 장, 벼룩장터를 실행하는 사업
	탄소제로 일곱 개의 약속	탄소제로의 사업을 고민하고 배우는 사업
	버려진 공간 새로 살리기	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 구간의 전봇대에 화단, 화분을 설치하는 환경개선 프로그램 사업
	옷 리폼 교육	재봉 기술을 배워 안 입는 옷으로 아이 옷, 소품 등을 리폼하는 사업
프로그램	나눔의 기쁨	주부들의 취미반을 개설해서 생필품을 함께 배우고 만들어 취약계층에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자국 음식 만들기	다문화가정과 한국 가정이 만나 타국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고 서로 문화 교류를 하는 사업
	마음 편히 일하세요	유아가 아닌 초등학생들을 돌봄하는 사업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혼자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운동과 건강 걷기를 통해 몸을 튼튼히 하고 마음도 함께 튼튼하게 하는 프로그램 사업
	반려 식물도 좋아	식물의 기본특성과 종류를 교육하고 심고 가꾸어보는 프로그램 사업
	숲 해설사 양성 과정	숲 해설사 양성을 위해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
	십시일장	재래된장에 관심 있는 주민을 모집하여 장도 만들고 만든 장의 일부를 기부해 취약계층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
	역촌 행복미용실	취약계층의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찾아오는 미용과 찾아가는 미용을 병행함으로 인간 존중의 의미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 사업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수화 교육을 통해 농아인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프로그램 사업
	나도 집수리 전문가	알고 나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유용한 간단한 집수리를 배우는 프로그램 사업

2024년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투표 결과

분야	연번	사업명	투표수	예산액(천원)
사전투표 : 704 현장투표 : 185 무효 : 25			914	100,000
프로그램	1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442 (49.7%)	5,000
	2	이웃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	393 (44.2%)	5,000
	3	나도 집수리 전문가	343 (38.5%)	5,000
	4	배움을 나누는 기쁨	309 (34.7%)	5,000
환경	5	아시나요, 아나바다	734 동의 (82.6%)	5,000
	6	탄소제로 일곱 개의 약속	785 동의 (88.3%)	10,000
	7	역촌골목에 꽃을	816 동의 (91.7%)	5,000
동특화	8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행복공간	736 동의 (82.7%)	30,000
시설	9	봉산 침사지 안전팬스 설치	790 동의 (88.9%)	15,000
	10	안심마을 개선 프로젝트	746 동의 (83.9%)	15,000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활동 소감

우리의 지난 1년은...

살면서 체감해보지 못했던
낮선 속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역촌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당당히 함께 걸어왔다는 것에
자랑스러움과 행복함이 앞섭니다.
겨울 같은 한 해를 지나왔으니
2024년은 언제나 봄이기를 바랍니다.
자치회장으로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달려보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장 홍상만

상반기 때는 어수선했지만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많아
위원님들과 동행을 같이해주신 주민들과
행복한 마무리 감사했습니다.
2024년에도 더많은 활동 기대하며
화이팅 합시다.

- 부회장 주희연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엿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한마음 축제와, 주민총회를 치르면서
모두의 협력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사업과
정신없는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모두 힘을 모아 잘 해나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 사무국장 이효미

조금은 어수선했게 시작한 2023년이지만
한해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즐거운 일이 더 많았던거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 오흥덕

23년도 한해 시작은 시끌벅적
어렵게 시작하여 잘 나가나 싶더니
갑자기 회장님이 바뀌고
총회, 축제를 함께 치러야하는 어려운 시간들.
이제는 지나간 추억이 되어 버렸네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어려운 모든 일들
다 치루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 해야하는
12월의 막바지에 다왔네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신 위원님들!
남은 23년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24년 잘 맞이해서
올해보다 더 좋은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 자치분과 강정순

올한해 바쁘게 열심히
한해를 보내며 되돌아 보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복지분과 마천숙

나눔분과 23년
 이미용사업은
 계획대로 성황리 마무리 잘했습니다.
 모두 열정적인 분과위원님들과
 이미용 봉사자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역촌동 어르신이 예뻐지시는 날,
 머리 커트와 염색하시고
 감사하다 행복하다 말씀들 많이하셨습니다.
 저도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 나눔분과 장여선

올해를 보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한파가 밀려와
 귀를 멍멍하게 하고
 또다시 봄을 기다려봅니다.
 이렇게 보냄과 기다림의 연속을 겪으며
 주민자치사업을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모진 소리도 들어야했고
 아낌없는 박수도 받았지만
 속상함보다는 즐거움이 배가 넘치다 보니
 나의 발길은 늘 주민센터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좀더 웃어줄걸 좀더 칭찬 많이 해줄걸
 좀더 많은 사람 손을 잡아줄걸 하는
 후회도 밀려오지만
 2023년은 내게
 늘 많은 행복을 주었습니다.
 아쉬움 보다는 행복함을
 한껏 끌어 안고 싶은
 2023년 내 추억의 장을 장식했습니다.
 내년엔 또 어떤 장이 나를 맞이할까
 기대해봅니다.

- 나눔분과 권성연

2023년 역촌동 주민자치회,
 뜻하지 않은 위기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 홍보분과 박상현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팀을 이끌어주시는 분과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리더십으로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도 더 기대가 되고
 오래살고 싶은 역촌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여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더욱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자치분과 주명희

다양하게 경험하고 배우며
 행복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건강하세요.^^

- 자치분과 김정란

역촌동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들어왔지만
 무색하게 할 정도로 등한시 했던
 행동이나 모습들에
 부끄럽고 후회하면서...
 올해 보다 나은
 내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분과 김지호

한 해동안

역촌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노고와 역촌동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책적인 당위성과
책임성만 강조해왔는데

그것을 가능케하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음)

특히 정책분과에서 책임을 갖고 진행했던
운영세칙개정 작업과 공론장운영
그리고 총회의제 수렴을 위한 홍보 등등
또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일과 주민자치회활동을 병행하면서도
늦은 시간 분과회의에 모두 참석하시고
분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와 품을 내고,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로,
정책분과가 단합할 수 있는
내공들을 보이셨던 정책분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했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적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민자치담당과 사무국,
주민자치회 임원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책분과 이춘희

1년을 되돌아 보니

‘참 빨리도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오는 날 축제를 진행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성숙된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건강분과 오수복

활기차게 지낸 2023년을 지내면서
건강분과에서 즐겁게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발전하는
역촌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분과위원 모두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행복했습니다.
역촌동 주민자치 화이팅~~

- 건강분과 백승자

올 한해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즐겁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서
내년도 열심히 봉사하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분과 이덕력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서
소중한 분들과 건기 하면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새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멋진 분들과 함께
좋은 곳 찾아 다니며 행보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건강분과 이순임

너무 추억이 많았던 2023년 이었습니다.
새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 건강분과 윤미숙

살기좋은 역촌동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역촌동 주민들과 함께
더~ 좋은 동네로 만들수 있도록
24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분과 노경임

아쉬운 2023년을 보내면서
모든 분들이 뜻깊은 일들을 할 때
마음이 행복하고
2023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밝아오는 2024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데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는 해를 만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사랑합니다. 주민자치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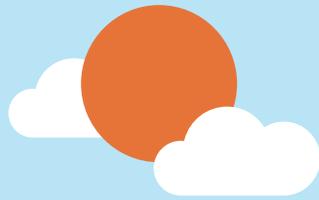
- 복지분과 김은숙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고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건강과 시간이 협조해 준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역촌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자치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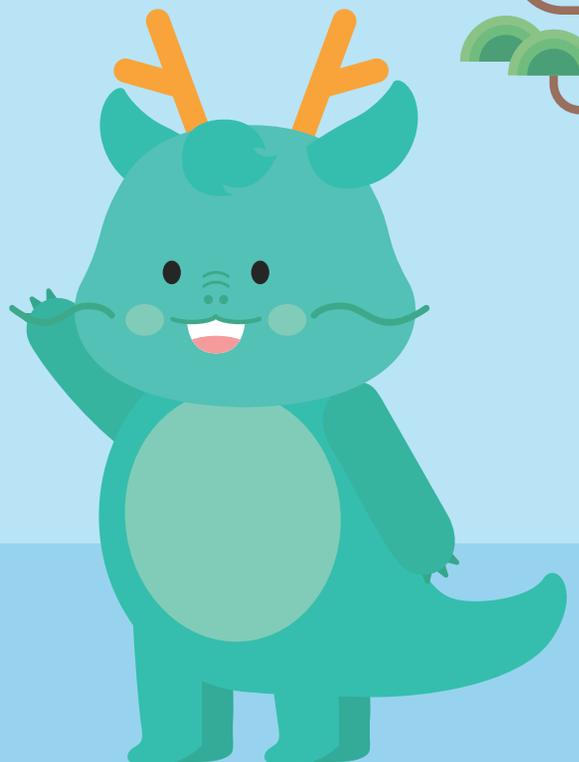
- 복지분과 홍청자

2023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위원님들의 희생적인 봉사 정신이었다.
깁스를 하시고도
분과의 책임을 다하시는 위원님이 계셨고
누리공간을 하루종일 무거운 책 정리와
청소를 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뿐이다.
회장님과 어떤 위원님은
누리공간에 잠깐 들렸는데 딱 그시간에
옥상에 설치 할 의자 책상이 배달 와서
'우리를 위해 시간 맞춰 배달이 왔구나'
하면서 즐겁게 옥상을 청소하고
셋팅을 하시는 등...
이처럼 임원진, 사무국, 위원님들이 모두
내 일처럼 역촌동 일을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니
다른 동에 모범이 될 수 밖에 없고
역촌동 주민위원회가 쪽~ 잘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역촌동 주민위원회는 사랑입니다.

- 정책분과 천경순



GOOD BYE 2023
WELCOME 2024



2023

역촌동 주민자치회

별칭 자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13.09.26 조례 제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20.07.09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〇〇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회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회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 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 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천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회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 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의 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정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별첨2]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9. 03. 07.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9. 03. 11.	초안 검토 및 의견수렴	사무국 회의
2019. 03. 18.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사무국 회의
2019. 03. 20.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사무국 회의
2019. 03. 26.	운영세칙 안건 상정 의결	정기회의
2021. 03. 17.	역촌동 2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1차)	운영회의
2021. 04. 05.	역촌동 2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2차)	운영회의
2021. 04. 13.	임원회의 운영세칙 수정(3차)	임원회의
2021. 04. 15~16.	전체 공람(SNS)	
2021. 04. 20.	4차 수정안 : 전체 단톡을 통해 수정변경사항 의결 - 60명 중 54명 안건동의) - 회비 : 전체 위원 무기명 투표로 찬반 결정 - 47명 투표 참여 / 19명 찬성 ① 5,000원 결정	
2022. 03.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정기회의
2023. 02. 17	역촌동 3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1차)	정책분과위원회
2023. 03. 06	역촌동 2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수정(2차)	정책분과위원회
2023. 06. 20	운영세칙 의결 및 전체공람	정기회의
2023. 11. 21	운영세칙 의결 및 전체공람	정기회의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역촌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역촌동 주민자치회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역촌동의 자치계획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 체계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원을 말한다.
2. “운영진”이란 주민자치회 임원, 사무국장, 간사, 각 분과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 총무)를 말한다
3. “사무국”이란 사무국장,간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주민자치회 사무처리와 운영실무를 지원하는 체제를 말한다.
4. “고문”이란 역촌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

제2장 주민자치회

구의회 의원과 역촌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② 자치회관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역촌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회관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역촌동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
3. 역촌동의 문화와 환경을 반영한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 배제

② 운영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역촌동 주민자치회 활동 사항,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을 요청시 공개한다.

제7조(기능) 조례 제5조에 따라 역촌동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생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업무
5.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6. 주민자치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행사, 재원 조성 등의 활동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대표 조직이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예비자 순위대로 위촉한다.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개모집과 공개추첨 과정을 통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직능단체 겸임은,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3개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한다. 직능단체의 범위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로 한다.

④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 6조의 운영원칙에 따라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사임 및 해촉)

① 임원, 자치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사임 하고자 할 경우 자치회장에게 사임서 제출 익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조례 제8조 제1항의 자격을 위배하거나 상실한 경우
2.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위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 태만으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단, 사무국 구성원은 제외)
 4.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그 밖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촉이 발의된 경우
- ④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불참 사유를 회의 전에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⑤ 위원의 해촉이 발의된 경우, 14일 이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선출)

- ① 주민자치회의 임원은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이내(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이 규정하는 임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자치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투표를 선출한다. (단, 재선거의 경우는 출석 인원 제한 없이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 ④ 임원선출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할 시 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
1.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
 2.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3. 선출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호선

제12조(임원의 역할)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치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 및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하반기 감사는 당해연도 감사가 실시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정기회의에서 공유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욕구 조사, 워크숍 등을 통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자치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분과를 신설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분과위원장 선출
 2. 분과위원회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3. 마을 의제 및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발굴
 4.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분과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설치)

- ① 사무국은 자치회장, 자치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를 구성원으로 한다.
- ② 사무국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행정업무와 회계업무 관리
 2. 자치계획 실행 과정 총괄
 3.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
- ③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사무국장 및 간사 등)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 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

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그 밖에 사무국장 선발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단 역촌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역촌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대한다)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역촌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에게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 2(인사위원회)

① 사무국장 선발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제 15조 2항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치회장이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단 사무국장 선발 지원자는 제외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3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외부인사 2명 이내
-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 회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인사위원회는 사무국장 선발이 완료 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17조(서류의 생산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보관한다.

1.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2.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3. 사업계획서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서류 및

문서 (직인 대장, 문서접수 대장, 문서등록 대장 등 기타)

②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생산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직인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 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회장에게 보고하고 날인 하도록 한다. (단 사무국 회의에서 공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날인 처리 후 사후 보고하여도 된다.)

제3장 주민자치회 회의

제19조(회의 개최)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한다.

② 정치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3. 동장이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요구할 경우
- ④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 및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개정
2. 임원의 해임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청산
4. 구청장에게 위원 해촉 요구

⑦ 주민자치회는 역촌동 고문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고문과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의결)

①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4. 위원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승인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련된 사항
 7. 임원회의 및 운영회의, 분과회의에서 공동으로 제안된 사항
 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및 자치회관 운영결과 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안건 심의의결은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설명 듣고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제21조(임원회의)

- ① 임원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최한다.
- ②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자치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 ③ 임원회의는 정기회의(임시회의 포함)와 운영위원회회의 등의 개최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회의에서의 의결사항과 위임업무를 집행한다.
- ④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임시회의 포함), 운영진 회의에 상정한다.

제22조(운영진 회의)

① 운영진회의 구성은 임원진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하여 업무협조)

② 운영진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전에 개최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진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

1. 정기회의에서 심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회의에서의 심의외의 사항
3. 기타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 (위임된 사항 포함)중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 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⑤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분과 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 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분과별 분과장은 월간 분과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을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 회의에서 토의한다.

③ 임원진을 포함한 사무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으로서 의무는 갖지 않는다.

④ 주민의 의견과 자치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분과로 구성한다.

⑤ 분과회의는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 총무를 지명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일반 주민을 분과원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구성원으로 한다.

⑦ 일반 주민이 분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⑧ 각 분과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2. 행정사무 위·수탁 발굴
3. 마을 공동사업 수행

제24조(민관협력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회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민관협력 회의는 동장, 팀장,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 부회장, 고문,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되고, 주민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총회

제25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만15세 이상의 주민(역촌동 거주, 사업장, 단체소속 등 생활권 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 (사전투표 포함)로 한다.
- ③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④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⑥ 주민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자치계획의 수립
 - 3.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및 선정
 -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⑦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 할 수 있다.

제26조(주민설명회 및 성과공유회)

- ① 자치계획 수립 미실행,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주민설명회는 개최 20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목적과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 정기회의 시 당해 년도

주민자치회 사업 정리, 평가 및 차 년도 사업안내를 위해 진행한다.

제27조(자치계획 수립)

- ① 자치계획을 구성하는 세부계획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 2. 사업 기간 및 내용, 소요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및 평가계획
 - 4.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 5.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 사항 등
- ②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 ③ 운영진 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④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서 통합 및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자치회관

제28조(자치회관 운영)

-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의 자치회관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준용한다.

제6장 재정관리

제29조(교부금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 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강료, 수익금, 수

탁금, 찬조금, 기타 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부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2. 수강료: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3. 수익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4. 수탁금: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은 사업비
5. 찬조금 및 기타 물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등의 자발적 후원금 및 물품

제31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보고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사무의 인계)

- ① 사무인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임원, 자치위원 및 분과원의 임기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 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위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단, 추진 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 중인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는 제외.)
 2. 인수인계 시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사무인계)를 준용하되,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 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특별회비)

- ① 주민자치회의 특별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찬조금 :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2. 특별회비는 정기회의 시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 회비는 매월 ₩10,000(일만원)으로 한다.
 - 가. 회비 사용은 선 의결 후 지출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선 지출도 가능하다.
 - 나. 회비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치회에 공개한다.
 4.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승인 의결을 거쳐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기타)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단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미만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는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매 30분 초과시 50%를 가산한다.
		50㎡이상~100㎡미만	7,500원	
		100㎡이상~150㎡미만	10,000원	
		150㎡이상~200㎡미만	12,500원	
		200㎡이상	15,000원	
수강료	월	10시간이하 프로그램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 1인 1프로그램 • 하한금액은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20시간이하 프로그램	15,000원	
		30시간이하 프로그램	25,000원	
		30시간초과 프로그램	35,000원	
체 력 단련실	1인/월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동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은 수강료로 징수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 동은 사용료로 징수 - 하한금액은 운동기구 및 부대시설, 시설노후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사용료 및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록장애인 국가·공공기관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회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100 퍼센트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개 이하 프로그램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의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 65세 이상 또는 만18세 이하인 사람 	50 퍼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자 	20 퍼센트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국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50 퍼센트	

[별표 3]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구 분	반 환 내 용	비 고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전액 반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 개시일 이후 : 일할계산하여 반환 	

역촌동 주민자치회 분과원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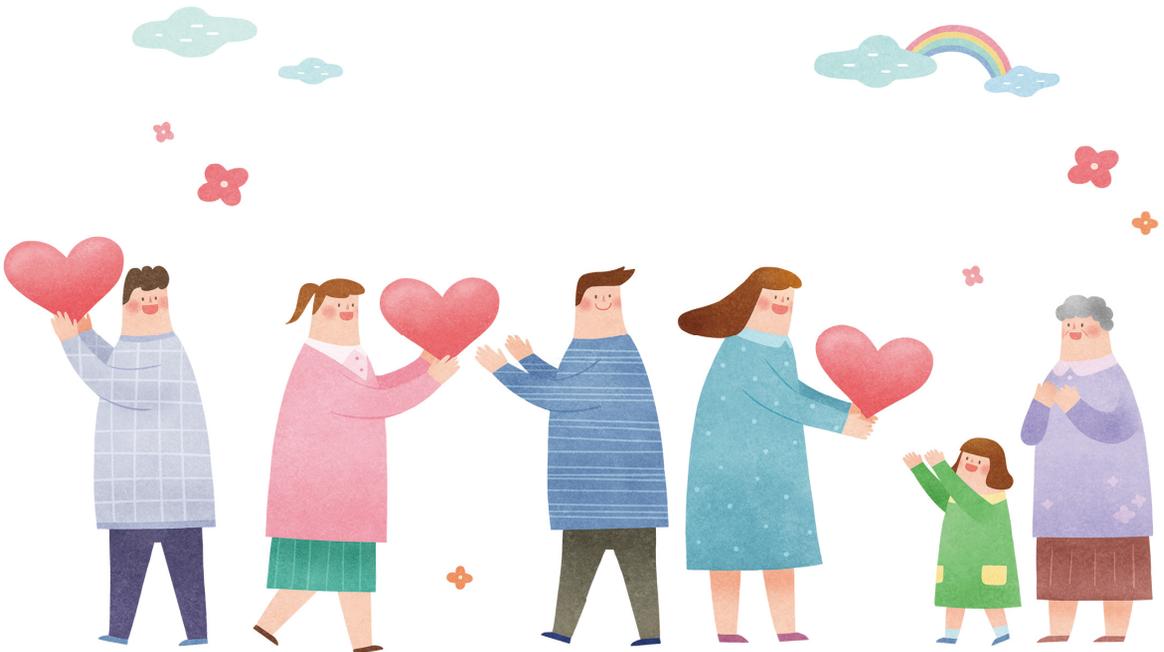
마을의 문제를 논의, 결정, 실행, 개선하고 싶거나,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봉사활동하고 싶은
역촌동 주민은 누구나
분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분과원이 되면 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정기회의, 운영진회의, 분과회의에 참여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

방문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전화 : 02-351-5302



2023년도 역촌동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발행처 역촌동 주민자치회
발행인 홍 상 만
주 소 서울 은평구 연서로 59 (역촌동) 주민자치회관 3층
연락처 02-351-5302

 **역촌동 주민자치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59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역촌동 주민자치회
Tel. 02-351-5329